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3710 |
|----------|------|

2026년 6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6년 5월 26일
다. 회부일 : 2026년 5월 27일
라. 상정일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진로탐색 및 체험의 수요증가에 따라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래진로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특화시설로,
-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7.1.1. ~ 2029.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370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3백만원, 운영비 246백만원, 사업비 79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2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학)광운학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노원 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7.1.1.~2029.12.31.)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6
- **시설규모** : 부지 2,519m² / 건물 3,299.76m²
- **개관일자** : 2019. 6. 27.
- **주요시설** : 멀티플렉스, 로봇 스페이스, 자율주행체험관, 스마트 라이프체험관, 스마트팜, 드론랩, E-Sport랩, 앤드커리어랩, 크리에이터스튜디오, lot스페이스 등
- **위탁기간** : 3년(2027.1.1. ~ 2029.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370백만원(20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3백만원, 운영비 246백만원, 사업비 79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2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2019년 개관하여, 최초부터 현재까지 7년간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이하 '광운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 2,519㎡(지하1층, 지상3층), 현원 24명(정규직 19명, 계약직 5명, 2026.4.30. 기준)의 직원이 23억 7천만원(2026년)의 예산으로 5개 분야, 8개 사업,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 구분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선정방법 |
|-------|------------------------------|------------------|-----------|
| 최초위탁 | 3년 (2019. 1. 1.~2021.12.31.) |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 신규(공개모집) |
| 2차 위탁 | 2년 (2022. 1. 1.~2023.12.31.) |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 재계약 |
| 3차 위탁 | 3년 (2024. 3.31.~2026.12.31.) |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 재위탁(공개모집) |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재계약 포기

현 수탁법인((학)광운학교 광운대학교)의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결과(평균 86.26점 : '23년 실적 86.72점, '24년 실적 85.80점)가 평균 85점을 상회(평균 86.26점)하여, 당초 재계약(2년 연장) 대상시설에 해당하였으나, 수탁법인에서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제출함.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6.4.30. 기준)

| 구분 | 총계 | 정규직 | | | | | | | | | | 비정규직 | | |
|----|----|-----|----|----|----|----|----|----|----|----|----|------|----|-------------|
| |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기능 | 고용 | 소계 | 계약 | 기타 (촉탁직) |
| 정원 | 22 | 22 | 1 | 1 | 2 | 3 | 5 | 5 | 4 | 1 | - | - | - | - |
| 현원 | 24 | 19 | 1 | 1 | - | 2 | 4 | 6 | 4 | 1 | - | 5 | 5 | - |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사업구성 〉

| 연번 | 분야 | 주요 사업 내용 | 계획 |
|----|-----------|---|-----------------|
| | 총계 | 5개 분야, 8개 사업, 40개 프로그램 | |
| 1 | 시설사용료 | 시설대관, 주차요금 | 2개 사업 |
| 2 | 목적사업 | 창의적 진로 체험 활동 지원(퓨처로드, 앤드월드, 코딩캠프 등),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 제공(AI 융합교육 프로젝트, 청년서포터즈, 미래준비 아카데미), 미래사회 대비 혁신적 학습 생태계 구축(코딩 페스티벌,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등) | 3개 사업, 36개 프로그램 |
| 3 | 자본형성사업 | 청소년시설기능보강(시설 내·외부 보수) | 1개 사업 |
| 4 | 보조금사업 | 구비 기타 공모(노원 퓨처로드) |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
| 5 | 기타 민간위탁사업 | 기타 민간위탁금(서울시청소년동행캠프, AI활동지원센터 구축) |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 구분 | 예산과목 | 2026년 | 구성비율 | 2027년(안) | 구성비율 | |
|----------|--------|-----------|-----------|-----------|-----------|-------|
| 세입 예산 | 계 | 2,370,000 | 100% | 2,416,000 | 100% | |
| | 위탁금 | 민간위탁금 | 1,532,077 | 64.6% | 1,578,000 | 65.3% |
| | | 민간위탁사업비 | 135,000 | 5.7% | 150,000 | 6.2% |
| | 보조금 | 국비보조금 | - | - | - | - |
| | | 시비보조금 | 200,000 | 8.4% | 155,000 | 6.4% |
| | | 구비보조금 | 30,000 | 1.3% | 30,000 | 1.2% |
| | 사업수입 | 시설이용료 수입 | 5,850 | 0.2% | 5,850 | 0.2% |
| | | 사업별수입 | 430,390 | 18.2% | 460,350 | 19.1% |
| | 사업외수입 | 예수금수입 | - | - | - | - |
| | | 이월금 | 35,000 | 1.5% | 35,000 | 1.4% |
| 기타잡수입 | | 1,683 | 0.1% | 1,800 | 0.1% | |
| 세출 예산 | 계 | 2,370,000 | 100% | 2,416,000 | 100% | |
| | 인건비 | 1,302,713 | 55.0% | 1,341,794 | 55.5% | |
| | 운영비 | 245,824 | 10.3% | 249,043 | 10.3% | |
| | 사업비 | 796,300 | 33.6% | 800,000 | 33.1% | |
| | 사업외지출 | - | - | - | - | |
| | 예비비 | 23,000 | 1.0% | 23,000 | 1.0% | |
| | 지난년도지출 | - | - | - | - | |
| | 반환금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163 | - | 163 | - | |
| | 이윤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2,000 | 0.1% | 2,000 | 0.1% | |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4년도의 성과를 2025년 9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의회가 2026년 상반기의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를 적정하게 살펴보고,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평가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한국정보경영평가(주)]
- 평가기간 : 2024년도(실시기간 2025.3.~9.)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5.8점(100점 만점)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4.1.~12. 성과) 결과 분야별 진학 및 취·창업 등에 대한 성과 지표화 관리, 연차축진제도 개선, 예산집행 효율 제고, 프로그램 및 업무절차 관리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 사항 〉

- 미래진로센터 최종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별 진학 및 취·창업 등에 대한 성과를 지표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차축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연차사용률 73%로 비교적 낮은 편인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분기별 예산계획을 집행 추이에 맞게 수립하고, 분기별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24년에 어떤 프로그램 및 업무절차가 개선되었고 신규 추진되었는지 체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운영평가 결과에서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분야별 진학 및 취·창업 등에 대한 성과를 지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바, 미래진로센터의 최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진로커리큘럼 개발,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분야별 성과(진학 및 취·창업 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처리, 관용차량 관리 미흡,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퇴직연금 및 퇴직금 지급 관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본 시설을 운영한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

| 연 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
| 2023년 |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누락 및 기안 미흡 | 조치 완료 |
| | 보조금 세목 간 변경 시 내부기안 미흡 | 조치 완료 |
| 2024년 | 관용차량 관리 미흡 | 조치 완료 |
| |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 조치 완료 |
| | 퇴직연금 및 퇴직금 지급 관리 미흡 | 조치 완료 |
| 2025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회의경비 과다 지출 | 조치 완료 |
| |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미흡 | 조치 완료 |

- 한편,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2026년 기준 시설사용료(시설대관, 주차요금), 목적사업(창의적 진로 체험 활동 지원,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미래사회 대비 혁신적 학습 생태계 구축), 자본형성사업(청소년시설기능보강) 등 5개 분야, 8개 사업, 4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2025년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사업 실적 〉

(단위 : 명/ '26.3.31. 기준)

| 연도 | 계획 | 실적 | 달성률 | 청소년실적 | 청소년이용률 |
|------|---------|---------|--------|---------|--------|
| 2024 | 188,761 | 213,034 | 112.9% | 197,942 | 92.9% |
| 2025 | 170,863 | 187,678 | 110.0% | 171,468 | 91.4% |

※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 |
|--|
| <p>다. 이용자 관리</p> <p><input type="checkbox"/> 업무내용</p> <p>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의 <u>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u>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

-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이 청소년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경우, 위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저하, 부적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감독 하지 못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와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는바,
- 적정수준의 지도·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분야에 최소한의 이해 또는 소양 등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되며, 청소년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추진 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3710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진로탐색 및 체험의 수요증가에 따라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래진로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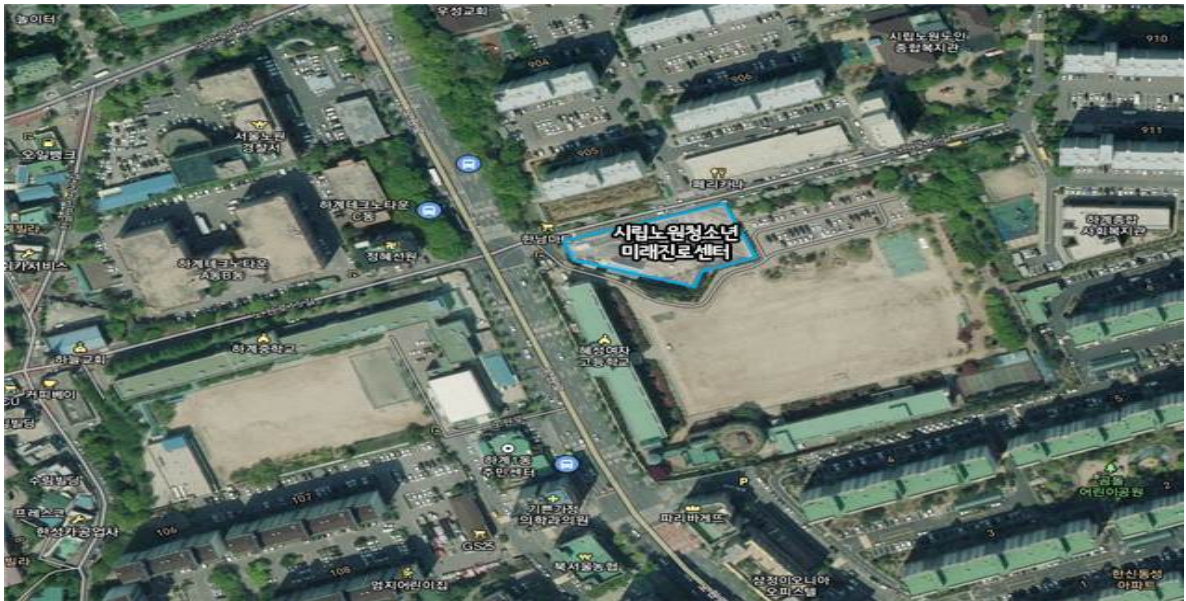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특화시설로,
-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6
- 개관일자 : 2019.06.27
- 시설규모 : 부지 2,519m² / 건물 3,299.76m²
- 주요시설 : 멀티플렉스, 로봇 스페이스, 자율주행체험관, 스마트 라이프체험관, 스마트팜, 드론랩, E-Sport랩, 앤드커리어랩, 크리에이터스튜디오, IoT스페이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7. 1. 1. ~ 2029.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370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3백만원, 운영비 246백만원, 사업비 796백만원, 사업외지출및기타 2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현주(☎2133-4124)